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52
----------	------

발의연월일 : 2020. 12. 7.

발의자 : 임호선 · 강준현 · 김경만  
김민철 · 문진석 · 소병철  
신정훈 · 윤준병 · 이광재  
이규민 · 이형석 · 정필모  
최종윤 · 홍기원 · 홍익표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0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1,472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18,848건으로 그 비율이 59.9%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61건으로 그 중 24건이 유전자검사 이후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이처럼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률 제 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을 “기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생략)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자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u>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u>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lt;단서 삭제&gt;</u>
1. • 2. (생략) 3. <u>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u>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③ ----- ----- <u>폐기</u> ----- -----.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절차 및 방법, <u>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 및 보관 등에</u>	④ ----- ----- <u>기록</u> ----- -----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	-----------------